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0. 6. 10.(수) 15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이숙애 의원 등 9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5월 29일
- 회부일자: 2020년 6월 1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학생의 범위 확대 및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통하여 인권친화 문화 조성과 노동인권 감수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- 노동인권교육 대상 학생 범위를 각급 학교 재학생 전체로 확대하고,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(안 제9조)
-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각급 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,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9조)
- 충청북도교육청 내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- 기타 조례의 미미한 사항 정비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과 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, 인권친화 문화 조성과 노동인권 감수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각급 학교 재학생 모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되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아울러, 같은 조에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직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면서, 특히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 자격연수와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였음
- 안 제10조에서는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, 소속 공무원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과 교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